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02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22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도일용 의원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
조례 근거 개정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
 - 제1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 → 제150조제3항
 - 제3조 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→ 제73조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4조제3항”을 “제15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제64조”를 “제73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제150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~② (생략)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른다. ④ (생략)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제73조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□ 지방자치법(시행 2022.1.13.) (2021.1.12., 전부개정)

제73조(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50조(결산)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